C - 15 - 2017

(5) 인력운반 작업 시에는 근로자의 목, 허리 등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위해 운반물 무게의 적정성을 유지[남자 196N~294N(20~30kgf) 이하, 여자 98N ~147N(10~15kgf) 이하]하여야 하며, 신체에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는 자세를 근로자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.

5.5 관로 매설 및 청소작업 시 안전보건조치 사항

- (1) 굴삭기 등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사용 전 점검을 실시하고 안전한 상태에서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.
- (가) 굴삭기 등 건설장비 운전원의 자격유무를 확인하고,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하여 부딪힘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나) 굴삭기 버켓의 연결상태, 용접된 인양고리의 고정·용접상태 및 퀵 커플러 안전핀의 체결여부 등을 사전에 확인하고 작업을 하여야 한다.
- (다) 굴삭기 등 건설장비 작업 중량에 따라 토사무너짐(붕괴) 위험이 없도록 굴착면에서 충분히 떨어진 장소에서 작업을 하여야 한다.
- (라) 자재 등 중량물의 인양은 크레인을 사용하고, 크레인의 뒤집힘 방지를 위해 평탄하고 견고한 지반위에 아웃트리거를 설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.
- (마) 자재 인양용으로 사용하는 와이어로프, 훅의 해지장치 등은 파손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하여야 하며, 줄걸이 방법을 준수하여야 한다.
- (2) 굴착면 상부의 부석, 토사 등을 제거하여야 하며, 지하수 및 지표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3) 굴삭기 등 장비작업 시에는 유도자를 배치하여야 하고, 유도자는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계획서에 따라 작업을 시행하여 근로자가 해당장비에 부딪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.
- (4) 관 등을 인력으로 운반 및 위치 변경 시에는 지렛대 등을 이용하여 안전한 작업자세로 작업하도록 하여야 한다.